
제14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(ICCAT) IMM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

2021. 6.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해외수산업협력센터

I 회의 개요

□ 회의명 : 제14차 통합 감시 조치(IMM) 작업반 회의*

* 영문명 : 14th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Integrated Monitoring Measures (IMM)

□ 회의 목적

- IMM 수립을 위한 조치 작업계획 및 초안 검토

□ 일시/장소 : '21.6.14.(월)~6.16.(수)* 오후 19:00~23:30/ 화상회의

*예정된 회의 기간은 17일까지였으나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16일에 폐회

□ 참석자 : 캐나다, 일본, 한국, 중국, 미국 등 (회원국 52개국) 대표단, NGOs 등

- 한국 대표단

이름	기관 및 직위	비고
나일강	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	수석대표
박민재	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	정부 대표
박보경	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	정부 대표
최봉준	한국원양산업협회 대리	자문
백상진	한국원양산업협회 사원	자문
김수민	해외수산협력센터 전문관	회의지원

□ 협력센터 전문관 업무

- 사전문서 검토 및 회원국 참고자료 확인, 회의기간 중 회의록 작성

□ 주요 의제

- eBCD
- CDS 주요 어종 추가
- VMS 정보 제공 개선 논의
 - 제출 정보 추가
- EMS 수립 등 다양한 모니터링 및 옵서버 프로그램 논의
- IUU 어업 방지를 위한 개정 논의
- 강제 노동
- 해상 및 항구 전재 이행 조치 제안서 논의

II 주요 논의 결과

1 eBCD

□ Re-grouping

- (모로코) 두가지로 분류 (동일 기국 or 공동조업활동(JFO) 기원, 기원이 상이한 어류) 시켜 그룹화할 것 논의
- (미국, 일본) traceability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되어 당장 채택하기 어려움

2 CDS 관리 주요 어종 추가 논의

□ CDS 관리 주요 어종 추가

- (모로코) 참다랑어 및 새치류에 우선 순위 두기를 원함
- (한국) 기타 수산관리기구와 양립성 중요하기 때문에 기구 간 공동 연구 필요할 것
 - 일본이 제시한 제안서 중 6항 아래 호에 “how to insure compatibility with other schemes of RFMOs” 추가하길 원함

□ CDS 관리 어종 추가에 대한 작업반 수립

- 다수의 회원국 이에 찬성함

3 VMS 추가 정보 필요성 논의

□ 현재 사무국이 제공 받고있는 VMS 정보 부족

- VMS 데이터 관리의 개선 위해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주길 기대
 - (사무국) 추가 데이터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데이터는 FR(출처), FS(기국)로 설정할 수 있으며 IR(내부조회번호) 및 XR(외부조회번호)는 회원국의 건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

4 EMS 도입을 위한 계획 및 노력 논의

□ EMS 도입을 위한 협력적 노력 필요

- (미국, EU) EMS 범위, 목적, 세부사항 및 규칙 설정 논의 지속해야 함을 강조
- (일본, 한국) 국가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어 운영 피드백 결과 회원국과 추후 공유할 것
- (모로코) EMS 도입을 위한 작업반을 제안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에 찬성함
 - (일본) SCRS 권고 사항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EMS 작업반을 당장 만들기에는 이르다는 뜻 표명

5 IUU 어업 방지를 위한 개정 수립 논의

□ IUU 어업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안서 계획 (imm-14/imm-09b)

	기존내용	제안 내용
1항	본 권고의 목적을 위해서, 체약국, 협력적 비체약국, 단체 또는 어업단체(이하 CPC), 또는 비CPC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들은 한 CPC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면 ICCAT 협약 수역 내에서 IUU 어업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	본 권고의 목적을 위해서, 체약국, 또는 비CPC, 단체 또는 조업 단체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할 경우, 선박이 ICCAT 협약 수역 내에서 불법, 비보고, 비규제 어업 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.
1항(i)	무국적으로 ICCAT 협약수역 내에서 다랑어 및 다랑어 유사어종을 어획; 그리고/또는	무국적으로 ICCAT 내에서 조업을 하거나 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및/또는

- 기존 rec.18-08의 IUU 선박에 대한 정의를 재수립
- (미국) 무국적 선박에 대한 분명한 정의 및 이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필요함 강조
 - imm-09b에 따라 개정된 rec 18-08을 기반으로 무국적 선박에 대한 imm-14 제안서가 imm작업반 제안서로 채택되길 기대
- (한국) 조업 기간 때문에 어떠한 경우 전제가 조업 허가 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참다랑어 조업선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선박

에 대해서도 전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 또는 면제 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 표명

- 조업 기간이 한 해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조업선 허가 목록에 등재가 안된 상태로 전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. 이런 경우 조업선 목록에 포함되어있지 않아도 전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만들기를 촉구함
- 이에 대한 개정안은 일본과 협력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기로 함

6 강제 노동(Force Labor)에 대한 논의 필요성

□ 강제 노동 및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

- ILO와 같은 기구는 4년마다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ILO에 의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ICCAT 차원에서 직접 문제 논의 진행하길 기대
- (미국) ICCAT 내에서 직접 논의 시작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 진행 시작하기를 기대
- 다른 수산기구와 협업하여 어떤 조치를 도입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논의 필요

7 해상 및 항구 전재 이행 조치 제안서 논의

□ 전재 관한 제안서 imm-06a/imm-15a

- (일본, 미국) Rec 18-15에 대해 전재 중 IUU 어업 가능성을 더욱 낮추기 위해 허가 운반선 및 연승선의 해상 전재 모니터링 등 추가적 조치 논의 필요
- (한국, EU) 해상 및 항구 전재에 대한 제안서 개정이 필요한 것 동의
- (대만) non-CPC의 공급선 및 운반선에 대한 보고 방식도 cpc의 것과 조화시킬 수 있길 논의

8 신규 읍서버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논의

□ 국가 읍서버를 넘어 지역 읍서버 시스템을 도입할 것에 대한 논의

- (EU) 국가 읍서버 이동에 대한 한계점 언급
 - (세네갈, 가봉) 연안개발도상국 회원국의 현 읍서버 프로그램 한계점 언급하며 새로운 읍서버 프로그램 도입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훈련 및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
- (한국) 이에 관련하여 현행화된 결의안 19-02와 16-04에 명시된 권고와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 언급
- (미국) 열대 다랑어에 집중할 것 건의
- 현재 ICCAT에서 연승 읍서버 커버리지는 5%에서 10%로 늘리도록 결정하였는데 추가 읍서버 도입을 논의하기엔 이르다는 의견 표명함. 현재 새롭게 설정된 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 후 논의하기를 기대

□ Remote Electronic Monitoring 시스템 도입 제안

- (EU) processing vessel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파일럿 프로그램 제안
 - 비용 절감, IUU어업 방지 등 이익 기대
 - (일본) 현재 읍서버 프로그램 등 선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현존하는데 추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이해 할 수 없어 지지할 수 없음 표명

□ 과학 읍서버 프로그램 개선 및 국가 이행 논의

- (미국) 반 이상의 회원국은 과학 읍서버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 우려를 표명함
 - (일본) JICA 등 국가의 과학 읍서버 프로그램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중에 있어 많은 나라들이 이를 이용해주길 기대